

대전학하 A-6BL 학하 리슈빌 포레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주택공급내역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38168호[2021.11.26(금)]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 90번길 76 (학하 A-6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9개동, 총 634세대[특별공급 25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관리 번호	주택 (타입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신혼부부	청년 (세어)	청년 (세대구분)			
2021-850012	74A	74.2500	23.9835	98.2335	48.0191	146.2526	127	-	-	-	127	2022년 9월
	74B	74.2500	23.9835	98.2335	48.0191	146.2526	-	-	-	41	41	
	84A	84.9881	25.7019	110.6900	54.9636	165.6536	-	9	-	-	9	
	84B	84.9637	27.3334	112.2971	54.9478	167.2449	-	-	9	-	9	
	84C	84.9881	25.7019	110.6900	54.9636	165.6536	-	110	-	214	324	
	84D	84.9637	27.4126	112.3763	54.9478	167.3241	-	-	-	98	98	
	84E	84.9854	26.1422	111.1276	54.9619	166.0895	-	-	-	26	26	
합계							127	119	9	379	634	

■ 세어형 침실별 면적

공급대상	타입	침실별 전용면적(㎡) / 인허가도서 기준		
		침실1	침실2	침실3
청년 세어형	84A	7.0884	6.6528	9.7387
	84C	22.2853 (욕실+드레스룸 포함)	7.0884	6.6528

■ 세대구분형 침실별 면적

공급대상	타입	전용면적(㎡) / 인허가도서 기준	
		세대1 (원룸형)	세대2 (투룸형)
청년 세대구분형	84B	23.2896	61.6741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표준형 임대조건 (특별공급(침실별)과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타입	공급유형	층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월 임대료 (전층)
				총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A	신혼부부	106동 1호, 2호, 3호, 4호 라인 107동 101, 201, 301, 401, 501, 601호 107동 102, 202, 302, 402, 502호	127	105,000,000	10,500,000	94,500,000	236,000
84A	청년 세어 (침실1)	104동 2호 라인	9	9,060,000	906,000	8,154,000	178,000
	청년 세어 (침실2)		9	8,500,000	850,000	7,650,000	167,000
	청년 세어 (침실3)		9	12,440,000	1,244,000	11,196,000	245,000
	청년 세어 (침실1)		110	18,560,000	1,856,000	16,704,000	365,000
84C	청년 세어 (침실2)	102동 2호 라인 (2802호, 2902호 제외) 103동 2호, 3호, 4호 라인	110	5,900,000	590,000	5,310,000	116,000
	청년 세어 (침실3)		110	5,540,000	554,000	4,986,000	109,000
84B	청년 세대구분 (세대1 원룸형)	104동 1호 라인	9	9,000,000	900,000	8,100,000	180,000
	청년 세대구분 (세대2 투룸형)		9	21,000,000	2,100,000	18,900,000	410,000
74B	일반공급	107동 1호 라인 (101, 201, 301, 401, 501, 601호 제외) 107동 2호 라인 (102, 202, 302, 402, 502호 제외)	41	119,000,000	11,900,000	107,100,000	267,000
84C		101동 1호, 2호 라인/ 102동 2802호, 2902호 105동 2호, 3호 라인/ 108동 1호, 2호 라인 109동 2호, 3호, 4호 라인	214	125,000,000	12,500,000	112,500,000	280,000
84D		102동 1호 라인 105동 1호 라인, 4호 라인 109동 1호 라인	98	125,000,000	12,500,000	112,500,000	279,000
84E		103동 1호 라인	26	125,000,000	12,500,000	112,500,000	279,000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시 표준형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3~6개월 전(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에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을 표준형 및 선택형1, 선택형2(총 3개의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은 입주 전 1회에 한정하여 임대조건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임대조건 변경신청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조건 변경서류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할 금액(단, 청약안내문에 기재된 전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예시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전환 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제 전환보증금 및 임대료는 추후 통지 예정)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잔금 납부 시 일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유효하며 변경신청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이 선택한 임대조건은 변경(최초 1회 변경 이후 재차 변경, 변경 이전으로의 회복 포함)이 불가합니다.
- 전환 임대조건

타입	공급유형	공급 세대수	계약자	공급 구분	표준형		선택형 1		선택형 2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74A	특별공급 (신혼부부)	127	127	-	105,000,000	236,000	89,300,000	273,000	78,800,000	298,000
84A	특별공급 (청년 세어)	9	9	침실1	9,060,000	178,000	7,700,000	181,000	6,800,000	183,000
84A			9	침실2	8,500,000	167,000	7,200,000	170,000	6,400,000	172,000
84A			9	침실3	12,440,000	245,000	10,600,000	249,000	9,300,000	253,000
84B	특별공급 (청년 세대구분)	9	9	원룸형	9,000,000	180,000	7,700,000	183,000	6,800,000	185,000
84B			9	투룸형	21,000,000	410,000	17,800,000	417,000	15,700,000	423,000
84C	특별공급 (청년 세어)	110	110	침실1	18,560,000	365,000	15,800,000	371,000	13,900,000	376,000
84C			110	침실2	5,900,000	116,000	5,000,000	118,000	4,400,000	120,000
84C			110	침실3	5,540,000	109,000	4,700,000	111,000	4,200,000	112,000
74B	일반공급	41	41	-	119,000,000	267,000	101,200,000	309,000	89,300,000	338,000
84C	일반공급	214	214	-	125,000,000	280,000	106,300,000	324,000	93,800,000	354,000
84D	일반공급	98	98	-	125,000,000	279,000	106,300,000	323,000	93,800,000	353,000
84E	일반공급	26	26	-	125,000,000	279,000	106,300,000	323,000	93,800,000	353,000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신혼 부부	127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 (예비신혼 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 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혼인 중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한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세어 및 세대 구분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혼인 중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한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체에서 추첨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학하리슈빌포레.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4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유의사항	·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종료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신혼부부) 청약은 반드시 74A 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혼인 중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자격요건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혼인 중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혼인 중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선정방법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혼인 중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11.29.(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가 혼인: 혼인 중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세대구분)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당첨자선정및등·호수배정을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등·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 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 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110% 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5	8,978,639
120% 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1.12.06.(월) 09:00 ~ 17:30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홈" 검색)	10만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체가능 금액 확인 필요)	2021.12.09.(목)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년 세어) (청년 세대구분)	2021.12.06.(월) 09:00 ~ 17:30	인터넷 청약접수 당사 홈페이지 (학하리슈빌포레.com)	없음	2021.12.09.(목) 16:00 당사 홈페이지 (학하리슈빌포레.com)
일반공급	2021.12.06.(월) 09:00 ~ 17:30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홈" 검색)	10만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체가능 금액 확인 필요)	2021.12.09.(목)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